

第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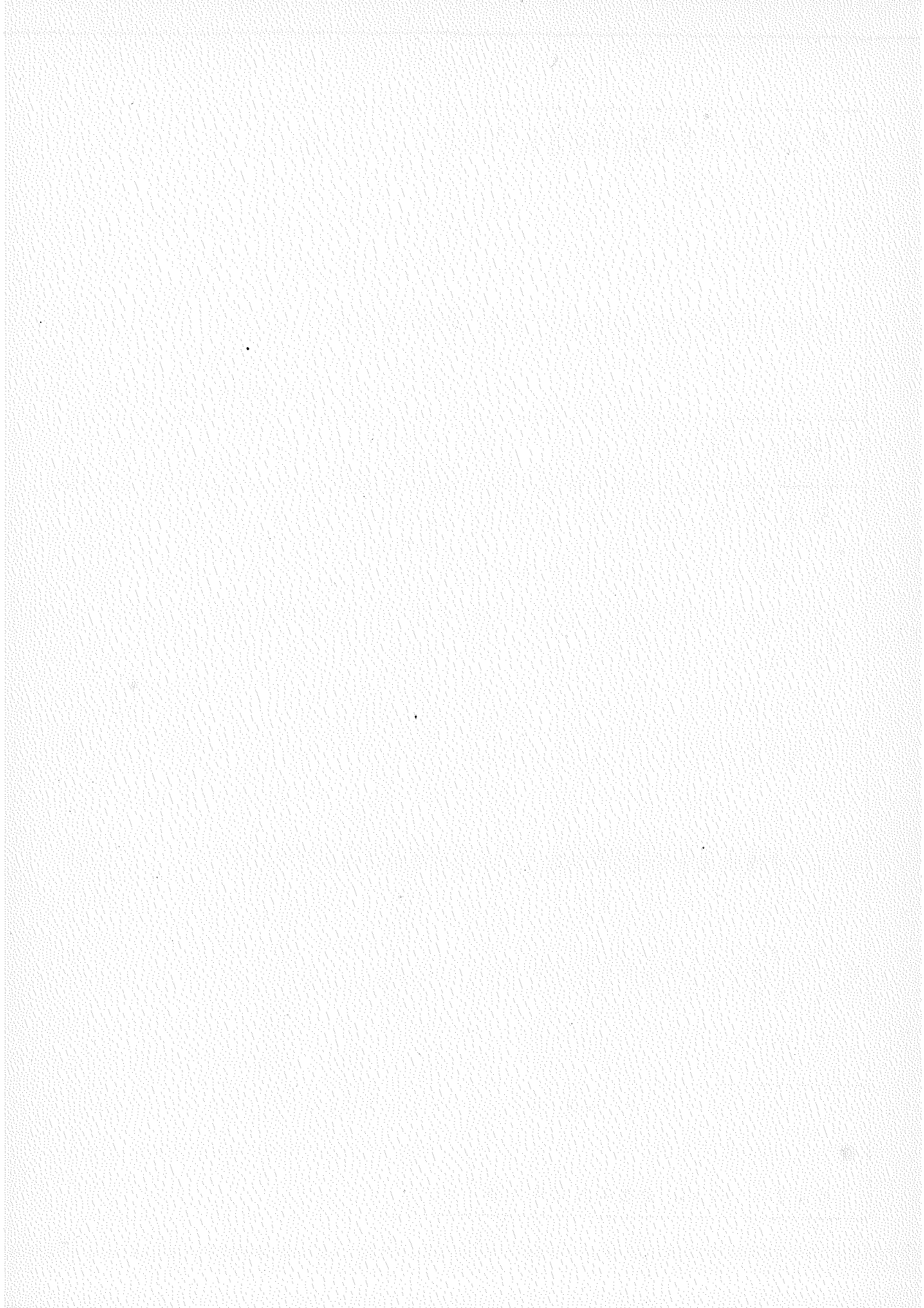
會 議 錄

('93. 9. 24~9. 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19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27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9월 24일 (금요일)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3.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3시 32분 개의)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 경과보고

(13시 35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제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93년도 9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혁풍 교육위원외에 세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하실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체 처리안건으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의안 처리결과입니다.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송부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9월 13일 개의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5억5,291만원이 삭감,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37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전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국장인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분할납부방법이 불합리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분할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기존조례의 분할납부방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규모로서 일시납부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삭제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납부시 대금의 일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재산에 한하여 연분로 납부하게 하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계약체결당시 결

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서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분할납부하도록 하고 1회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 이상을 납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할 납부대상을 중요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산규모가 커서 현실적으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중요재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과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분납금에 대한 이자는 민법 제587조의 규정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각대상물을 사용케한 이후 또는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에 적용하며, 일회분납금으로 2할 이상을 납부토록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최선의 기준이라 생각하여 책정했으며 분납비율을 더 이상 높이게 되면 분납의 의미가 상

실될 것 같아서 2할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을 조례에 명시한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뿐이며 당시에 교육부 조례준칙대로 개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분할납부방법을 명시해서 현내용대로 91년 3월 25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저촉여부 및 법리상 모순점 등 여부를 법제처, 내무부, 교육부 등의 자문을 받아 입안하였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희, 김응복,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위원님 다섯분을 위원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드린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과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3시 44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의장으로서 제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시기는 10월 21일부터 10

월 27일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토요일인 10월 23일과 일요일인 10월 24일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은 5일간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3시 4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의장으로서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소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교육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기관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계획서의 작성과 감사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본 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 또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김광수 두분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감사소위원회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3시 46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응복, 김광수 두분 위원을 선출

(13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 2.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9월 27일 (월요일)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 강인형)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4. 기타안건 처리

(11시 08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일입니다.
오늘 김영세 의장님과 권혁풍위원
님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개최

하는 전국교육위원회 의장 및 법개정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경과보고

(11시 09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제2차 본회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고, 감사소위원회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응복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시겠으며,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감사소위원회 이재회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응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응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응복
교육위원 김응복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이 지난 9월 24일자로 우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같은날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이 불합리하므로 매각대

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60일 이내에 완납토록 하였으며, 주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분할납부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로 5년 이내에 균등납부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자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때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때에는 상한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심사과정에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째,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은 현실과는 잘 맞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잡종재산중 중요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분할납부의 길을 터 놓음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분할납부시의 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연계시킨 것은 관련규정을 적절히 적용한 것이라는 데에 우리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심사위원들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김응복위원장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잘 상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대비표에 맨 밑에 보면 "3항, 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는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예,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100조의 1항에 대해서 그 상한율을 적용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여신금리가 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에서 정한 이자율, 이것이 연5푼입니다.

연 5푼이 일반여신금리에 그것에 미달하거나, 또 최고상한율은 연2할입니다.

이것을 초과할 때에 이 적용을 최하 연5푼에서 최고 연2할로 정하는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한율 일 경우에는 하한율 그 선에서, 또 상한율 일 경우에는 상한율 그 2할선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신을 어떻게 그었는가 이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일반여신금리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신금리가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거기까지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범위내를 잡아 놓는 겁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게 그러니까 원칙은 보통여신금리로 하되, 그

● 관리국장 신재철

여신금리가 푹 떨어져서.....

● 김광수 위원

5%이내에.....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거 이하로 내려갈 때는 5%로 하고 2할을 넘어갈 때는 2할을 그 여신금리의 이자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린 2할을 최고한도로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를 한도로 한다 그런 애깁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어떻게 김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고 대답)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하고 대답)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20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이재희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 이재희간사 발언대로 나옴)

● 감사소위원회 간사 이재희

감사소위원회 간사 이재희교육위원입니다.

2차에 걸쳐 10인 위원이 작성하여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건 발의 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93년도 집행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사무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교육위원회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 행정통제를 통한 민주행정을 구

현하며,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9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교육청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 21일은 단양교육청, 10월 22일은 괴산교육청, 10월 25일은 음성교육청, 10월 26일은 옥천교육청, 10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폭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기로 한 바, 교육청별 대상기관은 단양교육청 감사시는 단성중학교와 단양중학교, 괴산교육청 감사시는 명덕국민학교와 괴산중학교 괴산고등학교, 음성교육청 감사시는 수봉국민학교, 음성중학교, 음성고등학교, 옥천교육청 감사시는 삼양국민학교, 옥천여자중학교, 옥천공업고등학교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업무추진현황 보고의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관련서류의 검토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소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문제점이 없다면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감사소위원회로부터 제안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안건 처리

(11시 24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다음은 기타안건 처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회 기간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그리고 94년도 예산심의 등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셔서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의껏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 출석위원 : 9명

부 의 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김사수, 박병해,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정헌동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별첨 3.

議 事 日 程 (案)

第 29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9. 24 - 9. 27 (4 일 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 9. 24 (금)		
11:00	※ 교육위원 협의회	
13:30	※ 개회식	
	<p>【 제1차 본회의 개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93.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p>【 제1차 본회의 산회 】</p>	<p>회 기 9.24 - 9.27. (4 일 간)</p>
14:30	<p>※ 소위원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심의의결 ○ 제1차 감사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3.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議 事 日 程(案)

第 29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臨 時 會)

1993. 9. 24 - 9. 27(4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9. 25(토) -9. 26(일)</p>	<p>【 본회의 휴회 】</p> <p>※ 소위원회 활동</p> <p>○ 제2차 감사소위원회(9. 25)</p> <p>1. '93.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및 의결</p>	
<p>9. 27(월) 11:00</p>	<p>【 제2차 본회의 개의 】</p> <p>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의결</p> <p>2. '93.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p> <p>3. 기타안건 처리</p> <p>【 제2차 본회의 산회 】</p> <p>※ 폐회</p>	

의안번호	제29-1 호
의 결	1993. 9. 27.
년 월 일	(제 29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제출년월일 : 1993.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이 불합리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 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도록 함.
-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로 5년 이내에 균등 납부하도록 함
-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 함

□ 근 거 법 령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 제100조

□ 개 정 조 례 안

덧 붙 임

□ 기 타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산 상황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재산매각대금의납부등)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21조 (생략)</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 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 상에 사유 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 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 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 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 를 매각할 때 	<p>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재산매각대금의 납부 등)①잡종재산 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 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 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 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 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 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 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p>
<p>제23조 - 제5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제23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부분)발췌서

0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분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분내지 8분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9 - 2
----------	--------

발의일자 : 1993. 9. 27.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내지 제12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1993년도 집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목적

- 1) 교육행정사무 실태의 파악 및 교육위원회 활동자료의 수집
- 2) 효율적 행정통제를 통한 민주행정구현
 - 주요시책 및 사업성과 분석
 -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편익 저해요인의 제거
 -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예방
 - 비위·부정의 방지
- 3)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나.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10. 21.(단양교육청), 10. 22.(괴산교육청), 10. 25.(음성교육청),
10. 26.(옥천교육청), 10. 27.(충청북도교육청)

다.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주진현황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함.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 감사의 목적

가. 교육행정 사무실태의 파악 및 교육위원회 활동자료의 수집

나. 효율적 행정통제를 통한 민주행정 구현

- 주요시책 및 사업성과 분석
-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편익 저해요인의 제거
-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예방
- 비위·부정의 방지

다. 199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감사기간 : 1993. 10. 21. - 10. 27.(기간중 5일간)

3. 행정사무감사 세부실시 사항 : 따로 붙임 "1"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감사보조 사무직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일련번호	직	성명	비고
1	위원장	박병해	
2	간사	이재희	
3	위원	이상일	
4	위원	홍신희	
5	위원	김응복	
6	위원	김광수	
7	위원	이근수	
8	위원	김사수	
9	위원	권혁풍	
10	위원	장충호	

나. 감사보조 사무직원

일련번호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의사국	의사국장	이근수	
2	"	의사과장	강인형	
3	"	의안담당관	김용원	
4	"	의안연구관	김동현	
5	"	6급	김왕년	
6	"	7급	노한장	
7	"	7급	송석복	
8	"	사무보조원	정미숙	
9	"	"	최문영	
10	"	"	신향숙	

5. 감사 요구자료 : 따로 붙임 "2"

6.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업무주진현황 보고의 정취, 질의 및 답변,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한다.

7. 기타 행정사항

-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5항의 자료와 기타 관련자료 등을 감사대상기관별로 각 17부씩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비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외 비공개 자료 라고 표시를 하여 제출토록 한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연번	기관명	소속기관수	'91. 실시현황	'92. 실시현황	'93. 실시 예정기관
1	충청북도 교육청	77(고71, 직속6)	11.2, 11.6. (2일간)	10.26-10.27. (2일간)	○
2	청주교육청	135(유치원84, 국33, 중18, 직속1)	11.4.	10.22.	
3	중주교육청	108(유치원51, 국39, 중15, 직속3)		10.21.	
4	제천교육청	76(유치원35, 국27, 중12, 직속2)	11.5.		
5	정원교육청	91(유치원41, 국40, 중9, 직속1)			
6	보은교육청	55(유치원24, 국23, 중7, 직속1)			
7	옥천교육청	51(유치원22, 국21, 중6, 직속2)			○
8	영동교육청	57(유치원22, 국24, 중9, 직속2)		10.23.	
9	진천교육청	43(유치원18, 국18, 중6, 직속1)			
10	괴산교육청	82(유치원33, 국33, 중13, 직속3)			○
11	음성교육청	60(유치원26, 국24, 중9, 직속1)			○
12	단양교육청	50(유치원21, 국22, 중6, 직속1)			○

감 사 요 구 자 료

1993.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이상일	1. 고등학교 내신성적 관리 현황				도교육청	
	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대한 '93년도 장학지도 현황					
	연수횟수	행정 및 장학지도 횟수		확인점검방법		
	나.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및 봉사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다. 예·체능 및 교련교과의 실기평가 기준					
	2.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칭	'92년도 회의 개회 일수	연간 소요예산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여부		
	3. 과학교육원 운영실태					
학생이용현황			시내중심지로의 이전계획여부			
'92년도	'93년도	계				
4.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 연도별 지원내역('92. '93) 및 실소요경비 지원계획				도교육청		
5. 도내 각급 학교의 음용수증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기준 치 이상 검출되어 음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교수 및 이에 대한 대책				도교육청		
(김광수)	6. '93. 하계휴가증 증·고교 보충수업현황(양식: 별첨)				도교육청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이재희	1. 국민학교 담임의 연령통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증치 교사	평 균						
	※ 학년별 평균연령 기재								
	2. 학교안전공제회운영 현황								
	가. '92. 결산서, '93. 예산서 및 지출내역								
	나. 안전공제회 '93. 정기예금현황 (단위:천원)								
	예금주명	예금종별	예금액	기 간	이 율	이자수입			
	3. 교직원 자가용 보유현황 및 문제점 ○○교육청								
	학교별	교직 원수	차량보 유수	주차장 시설유무	교통사 고건수	사고발생자 징 계등 조치건수			
4. 각 교육청별 시설직 공무원 보수교육 및 선진지 시찰 내용									
5. 제천, 단양, 청원, 정주지역 교장 전보현황 ('92. 3. 1. - '93. 9. 30.)									
학교명	교장명	재임기간	전입일자	전출일자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이재희	6. 재적학생 50명 미만 학교 현황				도교육청				
	학교명	학생수	교직원수	통폐합 예정년도					
	7.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93.1.1. - '93.9.30.) ○○교육청				목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자문위원수	개최횟수	소요예산	안건처리 내용					
	8. 교감 전결사항의 법적근거 및 내용 9. '93. 연구지정학교 및 지원현황 ○○교육청 (단위:천원)				도교육청				
	학교명	지정종목	예산지원액	비 고				목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10. 교사음악발표회, 미술교사 전시회 등 지원현황				도교육청				
	11. 행정쇄신과제 제출 및 개선현황				도교육청				
	12.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처리현황				목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정정정정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원	요구자료명	대상기관	비고										
영신희 김영복	1. 학교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과 평가액, '92. '93. 법인 전입금 내역(기준액 대비)	도교육청											
	2. 철로변, 도로변 및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학교 현황과 대책												
	1. 국민학교 학습교구 비치현황 ○○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학교명</th> <th style="width: 15%;">학습자료종류</th> <th style="width: 15%;">보유기준</th> <th style="width: 15%;">보유수</th> <th style="width: 40%;">'93.구입현황</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학교명	학습자료종류	보유기준	보유수	'93.구입현황							
	학교명	학습자료종류	보유기준	보유수	'93.구입현황								
	※ 각 교육청별로 12학급이상 교종 1교, 6학급 교종 1교를 임의 선정하여 작성하되 시지역 소재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교구별로 기준수와 보유수 및 보유율 표시												
	2. 전년도 대비 '93년도 교원 업무경감 추진 실적자료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3. 각종 문화행사시 국민학교 동원 현황 ('93. 1.1. - '93. 9.30.)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행사명</th> <th style="width: 15%;">행사내용</th> <th style="width: 15%;">동원학생수</th> <th style="width: 15%;">행사로 인한 수업결손시수</th> <th style="width: 40%;">행사참여가 교육에 기여한 효과</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행사명	행사내용	동원학생수	행사로 인한 수업결손시수	행사참여가 교육에 기여한 효과							
	행사명	행사내용	동원학생수	행사로 인한 수업결손시수	행사참여가 교육에 기여한 효과								
	4. 초·중·고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표본적으로 1부씩 제출)		도교육청										
	5. 어머니 교육현황(환경오염 방지, 절약, 예의범절, 올바른 교육관 등)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교육분야</th> <th style="width: 15%;">교육방법</th> <th style="width: 15%;">교육횟수</th> <th style="width: 15%;">교육시수</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시수	비고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시수	비고									
6. 각급 학교 변소 개축계획 (단위 : 천원)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교육청별</th> <th style="width: 15%;">요개축 동수</th> <th style="width: 15%;">소요예산</th> <th style="width: 55%;">년도별 추진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교육청별	요개축 동수	소요예산	년도별 추진계획									
교육청별	요개축 동수	소요예산	년도별 추진계획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1. 잔임기간이 4년 미만인 교장의 재임용과 임기제교장의 명예퇴직 시행은 가능한가?						도교육청		
	2. 초·중등 교장, 교감 자격연수와 수급계획 가. '93. 10 현재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중 미발령자 나. '93. 연수대상자 선발방법 및 인원 다. '94. 수급계획						도교육청		
	3. 교감, 교장 승진 및 이동현황('93. 3.1. - '93. 9.30.)						도교육청		
	발령사항		발령전			비 고			
	성명	직급	소속 (부서)	직급	소속 (부서)				
	4. 교원표창 현황 ('92. 1.1. - '93. 9.30)						도교육청		
	소속	직	성명	준격	표창분야	비 고			
	5.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령 현황						도교육청		
	과목별	합격자	발령자	미발령자	발령 계획				비 고
					'93	'94	'95		
※ '91, '92년도 합격자별로 구분 작성									
6. 년도별 급식학교 확대 실시 계획(전학교 급식 실시시기까지의 계획)						도교육청			
7. 중·고등학교 부교재 활용실태 가. 부교재 선정 및 구입방법 ○○교육청						도교육청 전교 고교 중교 초교 특교 평교 정교			
학교명	부교재명	선정방법	구입방법	비 고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나. 동일부교재 선정 학교 및 학급현황 ○○교육청										
	부교재명	선정학교수	학급수	비 고							
	8.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현황 가. 지역교육청별 착용 비율 나. 교복을 다시 착용하게 된 동기와 수업 및 생활지도 상의 장·단점										도교육청
	9. 도내 각급 학교 사택보유 및 입주현황										도교육청
	종 보유	입주 동수	미입주 동 수	입 주 자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기능직			
	10. 공업계고교 운영현황 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방법과 1인당 실험실습비예산액 나. 기능자격증 취득 현황('92., '93.) 다. 취업현황('91., '92)										도교육청
	11. 초·중·고별 체력단련기 설치 및 활용현황 ('92., '93)										도교육청
	12.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정기예금 내역과 이자 수입액 ('93. 9. 30. 기준)										도교육청
	13. 교원징계현황('93. 1.1. - '93. 9.30.) ○○교육청										도교육청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합 계	비 고			
14. 근무성적평정점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양"이하로 평정된 교사현황(초·중·고별, 지역 교육청별)								도교육청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이근수	다. 교직원의 급식소 이용현황 ○○교육청 (단위:전원)				도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충청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학교명	이용자수	1인당 월 식비부담액	비고						
(김광수)	라. 급식학교 운영결과 분석 ○ 효과 ○ 문제점 및 대책						도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충청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5. 학생 폭력사고 실태 가. 사고유형별 처리현황 ○○교육청									
학교명	사고유형	학생수	처 리 결 과						비고	
			퇴학	정학						기타
(김광수 권혁풍 이재희)	나. 사고학교 생활지도 실적(관련 서류사본 첨부)								도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충청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6. 초·중·고별 지정종목 운동선수육성 현황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교육청 (단위:전원)									
학교명	지정종목명	선수인원수	지원 예산액	비고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위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사수	1. 민원사무 처리현황							도교육청 유전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교육청								
	종류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처 리 내 용				
	※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을 대상(인·허가, 제증명 관련사항은 제외)								
	2. '92., '93. 실업계고교 내부시설비 집행현황 (건당 100만원 이상)							도교육청	
	(단위 : 천원)								
	교 명	물품명	금 액	구입방법	납품업자				
	3. 특수학교 현황							도교육청	
	(단위 : 천원)								
	학교명	과정별	인 가 학급수	현 재 학급수	학생 정원	학생수	연간 예산액		
	4. '93. 국민학교 자산취득비 및 실험실습비 집행현황							유전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교육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물품명	배부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 교육청별 조사대상									
○ 유전교육청 : 삼양국, 청산국, 군동국									
○ 괴산교육청 : 동인국, 증평국, 광진국									
○ 음성교육청 : 수봉국, 삼성국, 부윤국									
○ 단양교육청 : 단양국, 상진국, 대가국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사수	5. '93. 들품구매 수의계약 현황(건당 500만원 이상) ○○교육청 (단위 : 전원)							
	품 목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일	납품업자	비고		
	6. '93. 시설공사 집행현황(건당 1억원 이상) ○○교육청 (단위 : 전원)							
	기관명	공사명	공사 금액	예정 가격	비 율	계약 방법	착공 일	준공 (예정)일
	시 공 자		비 고					
	업체명	대표자						
			이월공사명시					
	7. '93.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계약서 사본		도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구분	요구자료명	대상기관	비고						
박병해	1.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을 점수화 하여 내신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가. 특별교육 활동 계획	도교육청							
	계 획 내 용								
	년도별			지도종류	교육내용	시설계획	예산
	'93								
	'94								
	'95								
	나. 봉사활동 계획								
	계 획 내 용								
	년도별			지도종류	교육내용	시설계획	예산
	'93								
	'94								
	'95								
	2.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 방안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 '93, '94, '95년도 구분	도교육청							
	3. 도교육청 행정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도교육청							
	교육정별	학사관련 지적건수	회계관련 지적건수	기타 지적건수	조치내용				
단양									
괴산									
음성									
옥천									
※ 최근의 감사내용을 기준으로 함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박병해 (김광수)	4. '93.9.30. 현재 불량씨름 가입 학생수 (고등학교별로 해당학교만 작성)						도교육청	
	5. '93년도중 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학생수 ○○교육청							
	학교별	복역자수	집행유예 자수	선고유예 자수	훈방자수	비고	도교육청 단양교육청 고성교육청 고양교육청 전곡교육청	
	초							
	중							
	고							
	계							
(권혁풍)	6. '93년도 도서구입 및 보유현황 가. 학생도서 ○○교육청 (단위:천원)						단양교육청 고성교육청 고양교육청 전곡교육청	
	학교명	'93.구입 권수	금액	'93.기부 받은도서수	기준 수	증보 유수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나. 교사용도서 ○○교육청 (단위:천원)							
	학교명	'93 구입권수	금액	'93.기부 받은도서수	비고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7. '93. 간행물 구독 현황 자료 ○○교육청 (단위:천원)						단양교육청 고성교육청 고양교육청 전곡교육청	
	학교명	책자		신문			
		종류수	금액	종류수	금액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박병해	8. '93년도 교재교구 구입현황 ○○교육청 (단위:천원)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학교별	교과별	구 입 수 량	금 액	기 준	총 보 유 수			비 율 (%)									
	합 계																	
	※ 교육청별로 작성하되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며 학교별 로 "소계"를 표시하고 과학과는 제외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9. 학생용 컴퓨터 보유현황 ○○교육청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학교별	'93.고특회계 (육성회 포함) 구입수	기부받은수	사용불능수	비 고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합 계																단양고교육정 괴산고교육정 음성고교육정 영천고교육정	
	※ 교육청별로 작성하되 초·중학교별로 작성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위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 상 기 관	비 고				
권 혁 풍	1. 교육자치행정의 정착도 가. 학교장 재량권 한계의 변화 추이	도교육청					
	자치제 시행전의 학교장 위임사항			자치제 시행후의 학교장 위임사항	앞으로의 학교장 권한 위임 확대계획		
	※ 관계규정 사본 첨부			도교육청			
	나. 교원과 주민의 여론 수렴장치 현황 ○○교육청				유천고 괴산고 음성고 단양고		
	설치기관명	수렴장치명			주요처리내용	비 고	
	※ 교장회의, 교감회의, 교총대의원회 어머니회 등			도교육청			
	다. 교육과정운영의 지역화 현황 및 저해요인				도교육청		
	라. 학교시설 개방현황(운동장, 교실, 강당, 체육관 등) ○○교육청				도교육청 괴산고 음성고 단양고		
	시설명	시설보유 학교수		시설보유수	개방시설수	비개방시설수	
	2. '93. 장학지도 현황 ○○교육청			도교육청 괴산고 음성고 단양고			
	장학방향	장학방법			장학효과	저해요인	개선점 및 대책
※ 장학계획서 및 추진실적 첨부		도교육청 괴산고 음성고 단양고					
3. 학교운영비(교급당 경비) 배부현황 ○○교육청 (단위 : 천원)							
구 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비고	
교당경비							
급당경비							

요 위 구 령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권역종	4. 교직원 갑근세 소급과세 현황('92. '93 구분 작성) ○○교육청 (단위 : 천원)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광교육청 담양교육청		
	교원 정액별	세 금 명	교 원		일반직및기능직		계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 '91. '92년도 구분하여 작성										
	5. 창조성 교육을 위한 장학방침 · 운영 현황 및 효과								도교육청		
	6. 대입수학능력시험 시행결과 평가제도 개선방향								도교육청		
	응시 대상자수	응시자수	시험성적 평균	평가제도 개선 방향							
	7. 교육사업비 집행현황('92. '93.) ○○교육청 (단위 : 천원)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광교육청 담양교육청		
	사업명	집 행 내 역			예산요구 등에 있어 학 무과 연계여부						
		예산액	집행액	잔 액							
	8. 각급 학교 변소현황 ○○교육청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광교육청 담양교육청		
	구 분	종보유	수세식변소	재래식변소	비 고						
교직원용											
학생용 (유치원포함)											
※ 0 칸수로 산출하며, 초 · 중 구분 작성											
9. 노후교사 실태 및 대책 ○○교육청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광교육청 담양교육청			
학교명	총 교실수	노후 교실수	년도별 개축계획								
			'93	'94	'95	'96	계				

요 구 내 역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권역공	<p>10. 교육정별 특성교육운영 현황 가. 방향 나. 효과 다. 문제점 및 대책</p> <p>11. 교내 탁아소 설치 현황 및 확대계획</p> <p>12. 학교 학력평가제도 개선 방향(초·중등별)</p> <p>13. 국민학교병설유치원 운영 현황 가. 원장, 원감의 책임 한계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p> <p>14. 가을운동회의 교육적 효과(학교 찬조금과 관련하여)</p>	<p>육전교육정 괴산교육정 음성교육정 단양교육정</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p> <p>육전교육정 괴산교육정 음성교육정 단양교육정</p> <p>도교육청</p>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위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장중호 (이재희)	1. 공립 중·고교 과목상치 교사수와 대책	도교육청																												
	2. 시설학원과 관련하여 가. 교육청별 학원수(계열별) 나. 담당직원수 다. 시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사본(199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옥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3.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현황과 지도감독 실적 (199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옥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4.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보유학교별 최대 수용인원, 현재 수용인원, 예산액, 직급별 종사원	도교육청																												
	5. 혜화학교 이전계획의 현재 추진현황	도교육청																												
	6. '94.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시설공사 진행상황	도교육청																												
	7. 단양교육청 관내 학교의 관리자 근무지내 거주현황	단양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학 교 명 (소재지 주소)</th> <th style="width: 10%;">직책 별</th> <th style="width: 10%;">실 제 거주지 주소</th> <th style="width: 10%;">통근 거리 (KM)</th> <th style="width: 10%;">통근 소요 시간</th> <th style="width: 10%;">통근 수단</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무 책임 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 교 명 (소재지 주소)	직책 별	실 제 거주지 주소	통근 거리 (KM)	통근 소요 시간	통근 수단	비 고		교장							교감							서무 책임 자							
학 교 명 (소재지 주소)	직책 별	실 제 거주지 주소	통근 거리 (KM)	통근 소요 시간	통근 수단	비 고																								
	교장																													
	교감																													
	서무 책임 자																													
※ ○ 소재지 및 근무지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 통근거리는 도상거리를 기재 ○ 통근수단은 자가용, 노선버스, 도보 등으로 기재 ○ 사택거주는 비고란에 표시																														

'93. 하계 휴가증 보충수업 현황

1. 총괄

(단위 : 전원)

학 교 별	학 년 별	학 생 수	보충수업현황			보 충 수 업 비 역 (A)	집행액					잔 액 (A-B)	비 고
			참가 학생 수	수업 일수	수업 시수		지도수당		관리 수당	운 영 비	계 (B)		
							수업 참가 자	수업 버참 가자					
○○ 학교	1												
	2												
	3												
	계												
○○ 학교	1												
	2												
	3												
	계												
○○ 학교	1												
	2												
	3												
	계												
합계	1												
	2												
	3												
	계												

第 29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3. 9. 24.)

條 例 審 查 小 委 員 會

（台）中（經）發（委）經（發）本（經）思（國）印（第）

地產會 會 經 委 小 查 察 研 究

（第）一（冊）

會 經 委 小 查 察 研 究

목 차

1.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

2. 부 록

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9월 24일(금요일) 14시 14분

의사일정(제2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안담당관 김용환)
2.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14분 개의)

1. 경과보고

- 위원장 직무대행 김응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관으로부터 경과보고

가 있겠습니다.

- 의안담당관 김용환
의안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오늘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위원회가 구성됨과 아울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연후에 안건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2.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4시 17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복

회의진행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가 찬성하시므로 구두호천방법을 통하여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으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김응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잠시 침묵)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복

박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겁니까?

(위원 모두 "예"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의 찬성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본시 제가 법감각이 남달리 뛰어나지도 못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깊이 아는 바도 적어 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도와 주신다면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원장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권혁풍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 권혁풍 위원

김사수위원님께서 지금 저를 추천

하여 주셨는데, 저는 서울로 출장명
명이 나있어 27일날 열리는 제2차 본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으로 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권혁풍위원님이 출장으로 곤란하다
하니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박병해 위원

제가 이재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응복

그러면 이재희위원님을 간사로 선
출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겁니까?

(위원 모두 "예"하고 말함)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 이재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다
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설명바랍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14시 23분)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14시 28분)

● 위원장 김응복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겠으니, 의견
발표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본 조례개정안에는 계약보증금과
잔액의 납부사항만 들어가 있는데,
중도금의 납부사항을 넣지 않아도 되
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중도금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간사 이재희

예를 들면 폐지학교의 경우 토지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예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도 중요재산으로 보아 매수자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 경우에도 또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하여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렇다할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사수 위원

조례안 중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균등하게"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매회 균등하게 납부토록 하여야만 납부에 의한 수입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균등하게"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팔기쉽게 하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사들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매수자의 입장이 편리해질 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명도가 늦어질 경우에 납세의 책임은 매수자가 지는 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실제적으로 매수자의 입장이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관재계장 신건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납세의 책임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관재계장에게 발언권부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세금은 명도된 때부터 납부해야 되며,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명도를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자의 납세책임은 없습니다.

● 박병해 위원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하여"라고만 되어 있고, 곤란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므로써 무엇이 곤란할 경우인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관리국장 신재철

여기에서 "납부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약조건으로써는 매매성립이 곤란할 경우를 의미하며, 매수자의 일시납부능력 여하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모두 잠시 침묵)

● 위원장 김응복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침묵)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분할납부의 길을 터 놓음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주된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지금 이재희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 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하고 찬성 의사 표명)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며, 초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회의계속)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응복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간사로부터 심사보고서 작성
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응복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응복, 간사 이재희,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 출석공무원 : 3명

관리국장 신재철, 재무과장 정헌동, 관재계장 신건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
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침묵)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지금 간사가 보고드린 내
용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사가 지
금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밝히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산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2.

(별첨 1)

의안번호	제29-1 호
의 결	1993. 9 . 27 .
년 월 일	(제 29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제출년월일 : 1993.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이 불합리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 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도록 함.
-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로 5년 이내에 균등 납부하도록 함
-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 함

□ 근 거 법 령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 제100조

□ 개 정 조 례 안

덧 붙 임

□ 기 타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산 상황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재산매각대금의납부등)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21조 (생략)</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영 제100조</p> <p>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 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p>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재산매각대금의 납부 등)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 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p>
<p>제23조 - 제5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제23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부분)발췌서

0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분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분내지 8분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인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첨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9. 2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9월 18일

○ 회부일자 : 1993년 9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3. 9. 24.)

○ 조례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1993. 9. 24.)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이 불합리함으로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도록 함.

○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로 5년 이내에 균등납부하도록 함.

○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자	주 요 내 용	답변자	주 요 내 용
위원 권혁봉	○ 계약보증금과 잔액의 납부사항만 넣고 중도금 납부사항은 넣지 않아도 되나?	관리국장 신재철	○ 중도금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음.
간사 이재희	○ 예를들면 폐지학교의 경우 토지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일 경우도 중요재산으로 보아 매수자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관리국장 신재철	○ 그런 경우에도 또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하여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제한을 할 수 있음.
위원 김사수	○ "균등하게"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나?	관리국장 신재철	○ 매회에 균등하게 납부토록 하여야만이 납부에 의한 수입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균등하게 납부토록 한 것임.
위원장 김응복	○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팔기 쉽게 하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사들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매수자의 입장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나? 그리고 명도가 늦어질 경우에 납세의 책임은?	관리국장 신재철 관재계장 신건환	○ 매수자의 입장에서라도 편리해 질 것으로 생각함. ○ 매매 목적물에 대한 세금은 명도된 때부터 납부해야 되며,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명도를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자의 납세책임은 없음.
위원 박병해	○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라고만 되어 있고, 곤란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 여기에서 "납부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약 조건으로서 매매 성립이 곤란한 것을 의미하며, 매수자의 일시 납부능력 여부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4. 토론 주요내용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현행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은 현실과는 잘 맞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이 집중재산중 중요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분할 납부의 길을 터 놓음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분할 납부의 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을 적절히 적용한 것이라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기에 원안대로 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소수의견

없음

第 29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監查小委員會會議錄

('93. 9. 24. - '93. 9. 25.)

監 查 小 委 員 會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台科盛

목 차

1.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1차 감사소위원회.....	3
2. 제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차 감사소위원회.....	7
3. 부 록	
가) '93 행정사무감사계획.....	11

감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9월 24일(금요일) 13시 55분

의사일정(제29회 임시회 제1차 감사소위원회)

1. 경과보고(의안담당관 김용환)
2.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의안담당관 김용환)
2.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3시 55분 개의)

1. 경과보고

● 위원장 직무대행 장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의안담당관 김용환

의안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29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감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제1차 소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내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3시 59분)

● 위원장 직무대행 장중호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박병해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장중호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위원 모두 침묵)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반대의견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 찬성하시는 거죠?

(위원 모두 "예"하고 말함)

위원님 모두의 찬성으로 박병해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해 위원님은 저와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수행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간사에 이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병해

이재희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이재희위원님을 간사에 선임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재희위원님을 간사에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신거죠?

("예"하고 말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모두의 찬성으로 이재희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93.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편의상 간사가 계획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의 조정을 거쳐 그 사항을 간사가 제2차 소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 침묵)

제가 동의를 구한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93.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간사가 초안을 작성 보고토록 한후 보고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소위원회를 모두 마칠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 10명

위원장 박병해, 간사 이재희, 위원 이상일,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감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9월 25일(토요일) 10시 00분

의 사 일 정(제29회 임시회 제2차 감사소위원회)

1.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의 건

● 위원장 박병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은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간사 이재희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93. 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해

간사로부터의 설명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심의·의결에 들어 가겠
니 의견 발표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현장방문은 출신지역 교육위원님들이 2-3개 기관 정도를 선정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해

지금 장충호위원님으로부터 현장 방문기관을 출신지역 교육위원이 2-3개 기관 정도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방문 기관은 해당지역 출신 교육위원님들이 선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권혁풍, 장충호위원님께서 현장방문 기관을 선정하여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위원이 메모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함)

지금 세분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현장방문 기관과 제가 선정한 괴산지역 현장방문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지역은 단양중학교와 단성중학교를, 괴산 지역은 명덕국민학교와 괴산중학교, 그리고 괴산국민학교를, 음성 지역은 수봉국민학교, 음성중학교, 음성고등학교를, 옥천 지역은 삼양국민학교, 옥천여자중학교, 옥천공고를 현장방문 기관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현장방문시에는 열명의 감사위원이 같이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의 위원씩 조편성을 해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한명이나 또는 너무 소수의 위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는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모두 함께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 몇 명의 위원으로 조편성을 하여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해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시에는 모든 위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 몇 명의 위원씩 조를 편성하여 방문토록 하겠으며, 조편성은 간담회를 통하여 현지 실정에 맞추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본 감사계획 작성에 대하여는 이 회의 시작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상의가 되었으니 이쯤에서 의결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 권혁풍 위원

김사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감사계획안이 치밀하게 잘 작성되어 있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해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감사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0명

위원장 박병해, 간사 이재희, 위원 이상일,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 '93. 행정사무감사계획 : 별첨 1.

(별첨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 감사의 목적

가. 교육행정 사무실태의 파악 및 교육위원회 활동 자료의 수집

나. 효율적 행정통제를 통한 민주행정 구현

- 주요시책 및 사업성과 분석
-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편익 저해요인의 제거
-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예방
- 비위·부정의 방지

다. 199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감사기간 : 1993. 10. 21. - 10. 27.(기간중 5일간)

3. 행정사무감사 세부실시 사항 : 따로 붙임 "1"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감사보조 사무직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일련번호	직	성명	비고
1	위원장	박병해	
2	간사	이재희	
3	위원	이상일	
4	위원	홍신희	
5	위원	김응복	
6	위원	김광수	
7	위원	이근수	
8	위원	김사수	
9	위원	권혁풍	
10	위원	장충호	

나. 감사보조 사무직원

일련번호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의사국	의사국장	이근수	
2	"	의사과장	강인형	
3	"	의안담당관	김용환	
4	"	의안연구관	김동현	
5	"	6급	김왕년	
6	"	7급	노한장	
7	"	7급	송석록	
8	"	사무보조원	정미숙	
9	"	"	최문영	
10	"	"	신향숙	

5. 감사 요구자료 : 따로 붙임 "2"

6.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업무추진현황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한다.

7. 기타 행정사항

-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5항의 자료와 기타 관련자료 등을 감사대상기관별로 각 17부씩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비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외 비공개 자료 라고 표시를 하여 제출토록 한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연번	기관명	소속기관수	'91. 실시현황	'92. 실시현황	'93. 실시 예정기관
1	충청북도 교육청	77(고71, 직속6)	11.2, 11.6. (2일간)	10.26-10.27. (2일간)	○
2	정주교육청	135(유치원84, 국33, 중18, 직속1)	11.4.	10.22.	
3	충주교육청	108(유치원51, 국39, 중15, 직속3)		10.21.	
4	제천교육청	76(유치원35, 국27, 중12, 직속2)	11.5.		
5	청원교육청	91(유치원41, 국40, 중9, 직속1)			
6	보은교육청	55(유치원24, 국23, 중7, 직속1)			
7	옥천교육청	51(유치원22, 국21, 중6, 직속2)			○
8	영동교육청	57(유치원22, 국24, 중9, 직속2)		10.23.	
9	진천교육청	43(유치원18, 국18, 중6, 직속1)			
10	괴산교육청	82(유치원33, 국33, 중13, 직속3)			○
11	음성교육청	60(유치원26, 국24, 중9, 직속1)			○
12	단양교육청	50(유치원21, 국22, 중6, 직속1)			○

감 사 요 구 자 료

1993.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이상일	1. 고등학교 내신성적 관리 현황 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대한 '93년도 장학지도 현황	도교육청		
	연수횟수	행정 및 장학지도 횟수	확인점검방법	
	나.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및 봉사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다. 예·체능 및 교련교과의 실기평가 기준			
	2.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	도교육청		
	위원회명칭	'92년도 회의 개회 일수	연간 소요예산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여부
	3. 과학교육원 운영실태	도교육청		
	학생이용현황		시내중심지로의 이전계획여부	
	'92년도	'93년도	계	
	4.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 연도별 지원내역('92. '93) 및 실소요경비 지원계획	도교육청		
5. 도내 각급 학교의 응용수증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응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교수 및 이에 대한 대책	도교육청			
(김광수) 6. '93. 하계휴가증 중·고교 보충수업현황(양식: 별첨)	도교육청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홍신희 김응복	1. 학교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과 평가액, '92. '93. 법인 전입금 내역(기준액 대비)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 절로변, 도로변 및 공항주변의 소음파해 학교 현황과 대책												
	1. 국민학교 학습교구 비치현황 ○○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학교명</th> <th style="width: 15%;">학습자료종류</th> <th style="width: 15%;">보유기준</th> <th style="width: 15%;">보유수</th> <th style="width: 40%;">'93.구입현황</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학교명	학습자료종류	보유기준	보유수	'93.구입현황					
	학교명			학습자료종류	보유기준	보유수	'93.구입현황						
	※ 각 교육청별로 12학급이상 고중 1교, 6학급 고중 1교를 임의 선정하여 작성하되 시지역 소재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교구별로 기준수와 보유수 및 보유율 표시												
	2. 전년도 대비 '93년도 교원 업무경감 추진 실적자료												
	3. 각종 문화행사시 국민학교 동원 현황 ('93. 1.1. - '93. 9.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행사명</th> <th style="width: 15%;">행사내용</th> <th style="width: 15%;">동원학생수</th> <th style="width: 15%;">행사로인한수업결손시수</th> <th style="width: 40%;">행사참여가교육에기여한효과</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행사명	행사내용	동원학생수	행사로인한수업결손시수	행사참여가교육에기여한효과					
	행사명			행사내용	동원학생수	행사로인한수업결손시수	행사참여가교육에기여한효과						
	4. 초·중·고별 교원인사지문위원회 규정 (표본적으로 1부씩 제출)												
	5. 어머니 교육현황(환경오염 방지, 절약, 예의범절, 올바른 교육관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교육분야</th> <th style="width: 15%;">교육방법</th> <th style="width: 15%;">교육횟수</th> <th style="width: 15%;">교육시수</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시수	비고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시수	비고									
6. 각급 학교 변소 개축계획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교육정별</th> <th style="width: 15%;">요개축동수</th> <th style="width: 15%;">소요예산</th> <th style="width: 55%;">년도별 추진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교육정별	요개축동수	소요예산	년도별 추진계획									
교육정별	요개축동수	소요예산	년도별 추진계획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1. 잔임기간이 4년 미만인 교장의 재임용과 임기제교장의 명예퇴직 시행은 가능한가?						도교육청		
	2. 초·중등 교장, 교감 자격연수와 수급계획 가. '93. 10 현재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증 미발령자 나. '93. 연수대상자 선발방법 및 인원 다. '94. 수급계획						도교육청		
	3. 교감, 교장 승진 및 이동현황('93. 3.1. - '93. 9.30.)						도교육청		
	발령 사항		발령 전		비 고				
	성명	직급	소속 (부서)	직급					소속 (부서)
	4. 교원표창 현황 ('92. 1.1. - '93. 9.30)						도교육청		
	소속	직	성명	훈격	표창분야	비 고			
	5.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령 현황						도교육청		
	과목별	합격자	발령자	미발령자	발령 계획				비 고
					'93	'94	'95		
※ '91, '92년도 합격자별로 구분 작성									
6. 년도별 급식학교 확대 실시 계획(전학교 급식 실시시기까지의 계획)						도교육청			
7. 중·고등학교 부교재 활용실태 가. 부교재 선정 및 구입방법 ○○교육청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명	부교재명	선정방법	구입방법	비 고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나. 동일부고재 선정 학교 및 학급현황 ○○교육청											
	부고재명	선정학교수	학급수	비 고								
	8.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현황 가. 지역교육청별 착용 비율 나. 교복을 다시 착용하게 된 동기와 수업 및 생활지도 상의 장·단점 9. 도내 각급 학교 사택보유 및 입주현황										도교육청	
	종	입주	미입주	입 주 지								
	보유	동수	동 수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기능직				
	10. 공업계고교 운영현황 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방법과 1인당 실험실습비에산액 나. 기능자격증 취득 현황('92., '93.) 다. 취업현황('91., '92)										도교육청	
	11. 초·중·고별 체력단련기 설치 및 활용현황 ('92., '93)										도교육청	
	12.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정기예금 내역과 이자 수입액 ('93. 9. 30. 기준)										도교육청	
	13. 교원징계현황('93. 1.1. - '93. 9.30.) ○○교육청										도교육청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합 계	비 고				
	14. 근무성적평정점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양"이하로 평정된 교사현황(초·중·고별, 지역 교육청별)										도교육청	

요 위 구 번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15. '93.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산출근거 가. 보조금 산출 현황(관련서류 시본 첨부) 나. '92. 보조금 정산서	도교육청			
	16. 공사립별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과 주당 평균 수업 시수 비교 ※ 중 : 6, 12, 24학급 인문고 : 18, 24, 30학급규모의 학교를 임의선정하여 상호 비교	도교육청			
	17. 복식수업 현황 가. 학교 및 학생수 나. 교원수 다. 학년구성 라. 해소방안	도교육청			
	18. 2부제 수업학교(학교수, 학생수)현황 및 해소방안	도교육청			
	19.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전문직 배치 현황 가. 기관별 정·현원 현황 및 과부족 사유 나. 지역 교육청의 파견교사 현황	도교육청			
	20. 시설공사 하자보수 내역('92. 1.1. - '93. 9.30.) ○○교육청 (단위:천원)	도교육청 울진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공사명	공사금액	하자보수액	하자보수내용	도급업자
	21. 중등장학과 학생생활지도비 예산집행 내역과 생활지도 실적	도교육청			
	22. 교원노조 현황 가. 충북 교원노조의 최근 동향 나. 교원노조 해직교사 복직요구자 현황과 대책	도교육청			
23. 가을운동회를 주석 연휴기간중 실시한 국민학교 (지역교육청별 비율)	도교육청				
24. 각급학교 찬조금 기탁현황 및 집행내역	도교육청 울진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전 진 전 진 전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박병해	1.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을 점수화 하여 내신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가. 특별교육 활동 계획	도교육청							
	년도별			계 획 내 용					
				지도종류	교육내용	시설계획	예산
	'93								
	'94								
	'95								
	나. 봉사활동 계획								
	년도별			계 획 내 용					
				지도종류	교육내용	시설계획	예산
	'93								
	'94								
	'95								
	2. 도·동간의 학력격차 해소 방안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 '93, '94, '95년도 구분								
	3. 도교육청 행정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교육정별	학사관련 지적건수		회계관련 지적건수	기타 지적건수	조치내용			
단양									
괴산									
음성									
옥천									
※ 최근의 감사내용을 기준으로 함									
		도교육청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김광수)	4. '93.9.30. 현재 불량씨를 가입 학생수 (고등학교별로 해당학교만 작성)						도교체 정	
	5. '93년도중 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학생수 ○○교육청							
	학교별	복역자수	집행유예 자수	선고유예 자수	훈방자수	비고		
	초							
	중							
	고							
	계							
(권혁풍)	6. '93년도 도서구입 및 보유현황 가. 학생도서 ○○교육청 (단위:전원)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학교명	'93.구입 권수	금액	'93.기부 받은도서수	기준 수	증보 수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나. 교사용도서 ○○교육청 (단위:전원)							
	학교명	'93 구입권수	금액	'93.기부 받은도서수	비고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7. '93. 간행물 구독 현황 자료 ○○교육청 (단위:전원)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도교체 정	
	학교명	적자		신문			
		종류수	금액	종류수	금액			
	※ 국민학교, 중학교별로 작성							

영역구분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박명해	8. '93년도 교재교구 구입현황								전국전체 유치원 초·중·고·대 교육청 민간교육기관			
	○○교육청 (단위:천원)											
	학교별	교과별	구수	인원	금액	기준	종보유수	비율(%)				
	합계											
	※ 교육정별로 작성하되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며 학교별로 "소계"를 표시하고 과학과는 제외											
	9. 학생용 컴퓨터 보유현황										전국전체 유치원 초·중·고·대 교육청 민간교육기관	
	○○교육청											
	학교별	'93.교특회계 (육성회 포함) 구입수	기부받은수	사용불능수	비고							
합계												
※ 교육정별로 작성하되 초·중학교별로 작성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권혁풍	1. 교육자치행정의 정착도					도교육청	
	가. 학교장 재량권 한계의 변화 주어						
	자치제 시행전의 학교장 위임사항	자치제 시행후의 학교장 위임사항	앞으로의 학교장 권한위임 확대계획				
	※ 관계규정 사본 첨부						
	나. 교원과 주민의 여론 수렴장치 현황						
	○○교육청						
	설치기관명	수렴장치명	주요처리내용	비 고			
	※ 교장회의, 교감회의, 교종대의원회 어머니회 등						
	다. 교육과정운영의 지역화 현황 및 저해요인						
	라. 학교시설 개방현황(운동장, 교실, 강당, 체육관 등)						
	○○교육청						
	시설명	시설보유 학교수	시설보유수	개방시설수	비개방시설수		
	2. '93. 장학지도 현황						
	○○교육청						
	장학방향	장학방법	장학효과	저해요인	개선점 및 대책		
※ 장학계획서 및 추진실적 첨부							
3. 학교운영비(교급당 경비) 배부현황							
○○교육청 (단위 : 천원)							
구 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비고		
교당경비							
급당경비							

단 위 구 분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실 적 종	4. 교직원 갑근세 소급과세 현황('92. '93 구분 작성) ○○교육청 (단위 : 천원)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암교육청 단양교육청			
	내 용 구 분	세 금 명	교 원		일반직및기능직		계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소급 과세액			1인당 평균액	
	※ '91. '92년도 구분하여 작성										
	5. 창조성 교육을 위한 장학방침·운영 현황 및 효과									도교육청	
	6. 대입수학능력시험 시행결과 평가제도 개선방향									도교육청	
	응시 대상자수	응시자수	시험성적 평균	평가제도 개선 방향							
	7. 교육사업비 집행현황('92. '93.) ○○교육청 (단위 : 천원)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암교육청 단양교육청	
	사업명	집 행 내 역			예산요구 등에 있어 학 무과 연계여부						
		예산액	집행액	잔 액							
8. 각급 학교 변소현황 ○○교육청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암교육청 단양교육청				
구 분	종보유	수세식변소	재래식변소	비 고							
교직원용											
학생용 (유치원포함)											
※ ○ 칸수로 산출하며, 초·중 구분 작성											
9. 노후교사 실태 및 대책 ○○교육청							도교육청 전남교육청 고산교육청 영암교육청 단양교육청				
학교명	총 교실수	노후 교실수	년도별 개축계획								
			'93	'94	'95	'96			계		

의견 구분	요 구 자 료 명	대상기관	비고
권역 공	<p>10. 교육정책 특성교육운영 현황 가. 방향 나. 효과 다. 문제점 및 대책</p> <p>11. 고내 탁아소 설치 현황 및 확대계획</p> <p>12. 학교 학력평가제도 개선 방향(초·중등별)</p> <p>13. 국민학교병설유치원 운영 현황 가. 원장, 원감의 책임 한계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p> <p>14. 가을운동회의 교육적 효과(학교 찬조금과 관련하여)</p>	<p>유전교육진흥 고산교육진흥 음성교육진흥 단양교육진흥</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p> <p>유전교육진흥 고산교육진흥 음성교육진흥 단양교육진흥</p> <p>도교육청</p>	

199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원	요구자료명	대상기관	비고																												
장중호	1. 공립 중·고교 과목상치 교사수와 대책	도교육청																													
	2. 사설학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가. 교육정별 학원수(계열별)	공산교육청																													
	나. 담당직원수	음성교육청																													
	다.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사본(199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양교육청																													
	3.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현황과 지도감독 실적 (199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																													
	4.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보유학교별 최대 수용인원, 현재 수용인원, 예산액, 직급별 종사원	공산교육청																													
5. 혜화학교 이전계획의 현재 추진현황	도교육청																														
6. '94.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시설공사 진행상황	도교육청																														
(이재희) 7. 단양교육청 관내 학교의 관리자 근무지내 거주현황		단양교육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학교명 (소재지 주소)</th> <th style="width: 10%;">직책 별</th> <th style="width: 15%;">실제 거주지 주소</th> <th style="width: 10%;">통근 거리 (KM)</th> <th style="width: 10%;">통근 소요 시간</th> <th style="width: 10%;">통근 수단</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교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교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서무 책임 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교명 (소재지 주소)	직책 별	실제 거주지 주소	통근 거리 (KM)	통근 소요 시간	통근 수단	비고		교장							교감							서무 책임 자							
학교명 (소재지 주소)	직책 별	실제 거주지 주소	통근 거리 (KM)	통근 소요 시간	통근 수단	비고																									
	교장																														
	교감																														
	서무 책임 자																														
	※ ○ 소재지 및 근무지 주소는 읍·면까지만 기재 ○ 통근거리는 도상거리를 기재 ○ 통근수단은 자기용, 노선버스, 도보 등으로 기재 ○ 사택거주는 비고란에 표시																														

'93. 하계 휴가중 보충수업 현황

1. 초 고

(단위 : 전원)

학 년 월	학 년 월	학 생 수	보충수업현황			보 충 수 업 수 비 율 (A)	집 행 액					전 액 (A-B)	비 고
			잠 기 학 생 수	수 업 일 수	수 업 시 수		지 도 수 당		관 리 수 당	운 영 비	계 (B)		
							수 업 자	수 업 비 정 가 자					
○○ 학교	1												
	2												
	3												
	계												
○○ 학교	1												
	2												
	3												
	계												
○○ 학교	1												
	2												
	3												
	계												
합 계	1												
	2												
	3												
	계												

